

제 호

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

- 기관(단체) 명칭:
- 소재지:
- 대표자: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의5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
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
특별자치도지사

직인